예 산 총 칙

2017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719,838,371	21,595,151
일반회계	638,907,488	19, 167, 225
특별회계	80,930,883	2,427,926
공기업특별회계	60,652,933	1,819,588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2,829,886	984,897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7,823,047	834,691
기타특별회계	20,277,950	608,339
의료급여기금기타특별회계	1,497,094	44,913
거제시 거가대교관광지 조성사업 보상특별회계	7,168	215
대대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2,133,420	64,003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364,438	10,933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13,579,713	407,391
폐기물처리시설사업기타특별회계	1,879,725	56,392
지하수특별회계	816,392	24,492

- 제 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 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 제 4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244,544천원으로 한다.
- 제 6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5,900,000천원으로 한다.
- 제 7조 『지방재정법』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 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